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10130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可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8. 3. 16.

판결 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41,190,344원 및 그 중 340,569,127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군포시 C 답 615㎡에 관하여,가. 피고들 사이에 2016. 9.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9. 26. 접수 제1298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표이사인 피고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D은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금원을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비 고
2013.12.23.	소외 은행	E	2014.12.23.	135,000,000원 (150,000,000원)	이하 '보증1'이라 합니다
2014.07.03	소외 은행	F	2015.07.03	135,000,000원 (150,000,000원)	이하 '보증2'라 합니다
2014.07.03	소외 은행	G	2019.07.03	135,000,000원 (150,000,000원)	이하 '보증3'이라 합니다

(2) 이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1의 보증기한이 2016. 12. 23.로, 보증2의 보증기한이 2017. 6. 30.로 각 변경되었다.

(3) D이 2016. 10. 5.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6. 12. 21. 380,369,851원(보증1 관련136,537,657원 + 보증2 관련 136,623,363원 + 보증3 관련 107,208,8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D은 보증1 관련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7. 2. 15. 39,800,724원을 변제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340,569,127원(보증1 관련 96,736,933원 + 보증2 관련136,623,363원 + 보증3

관련 107,208,831원)이 남아 있다.

(5)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6. 12. 2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보증1과 관련하여 위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621,217원이다. 나. 피고 A은 2016.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29874호로 피고 B에게 피고 A 소유의 군포시 C 답 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21.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피고 A : 자백간주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41,190,344원(= 보증1, 2, 3 대위변제금합계 340,569,127원 + 보증1 관련 확정 지연손해금 621,21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340,569,127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3. 16.까지는 약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고 A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D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기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2016. 9. 21.로부터 14일 만인 2016. 10.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16. 12. 21.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2016. 9.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A이 2016. 9.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9, 11, 12, 1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유일하고¹⁾ 그 가액은 최대 159,900,000원 정도인데 피고 A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외에도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조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 10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금채무 100,0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금채무 100,040,000원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따라서 피고 A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 그리고 피고 A에게는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

피고 B는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이로써 피고 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정, 판사 장민석, 판사 강윤희

1)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화성시 H아파트 112동 606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6. 9. 9. I에게 이를 204,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0.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